

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9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3. 6. .
제 출 자 : 중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- 가. 국가시책 사업 및 시설물 건립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2013년도 총액 인건비 인력 조정분에서 정원을 증원하고
- 나. 공단 설립에 따른 감축 인력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등 신규사무에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해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정원의 총수를 “562명”에서 “570명”으로 8명을 증원(안 제2조)
- 나. 집행기관의 정원 “546명”을 “554명”으로 8명을 증원(안 제2조)
- 다. 직급별 정원조정(안 제4조 별표3)
 - 일반직 : 500명 → 508명(증 8명)

3. 근거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 사항 : 비용추계서(붙임)
- 나. 규제사무십의 : 해당없음
- 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작성제외
- 라. 입법예고 : 2013. 5. 21. ~ 2013. 5. 31.(의견 없었음)

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562”을 “57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546명”을 “554명”으로 한다.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의 개정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대하여 발생하는 초과 현원은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3년 6월 3일 · 중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3년 6월 5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5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(의안번호 제992호)
(2013년 6월 14일 상정의결)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최일식 기획예산실장)

가. 제안이유

- 1) 국가시책 사업 및 시설물 건립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2013년도 총액 인건비 인력 조정분에서 정원을 증원하고
- 2) 공단 설립에 따른 감축 인력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등 신규사무에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해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정원의 총수를 "562명"에서 "570명"으로 8명을 증원(안 제2조)
- 2) 집행기관의 정원 "546명"을 "554명"으로 8명을 증원(안 제2조)
- 3) 직급별 정원조정(안 제4조 별표3)
 - 일반직 : 500명 → 508명(증 8명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검토보고자 : 김진만 전문위원)

2013년 총액인건비 인력조정분에 대해 새로운 시책업무와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을 확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조례 일부 개정 사항으로 조례개정 제반 사항은 적정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